

IV 결론 : 조정심리제도의 활성화와 언론 활동의 조화

“인류의 생활조건을 개선해 나가려 한다면 철학자, 신학자, 입법가, 정치가 그리고 도학자(道學者)들은 그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어렵고도 위험하며, 그러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신문(언론)에 대한 규율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언론 없이 인간을 통치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현재 신문이 있어도 인간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존 아담스(John Adams)의 지적은 언론활동 필요성과 함께 언론 규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해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은 정부활동이나 여타의 공공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공중의 대리자로 역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회의 감시자’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왔다. 이처럼 사적 존재양식의 언론에게 공적 임무가 강조되는 언론은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핵심적 사회세력화되고 있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자기권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언론은 때로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언론기관이 갖는 정치적 권력에 비추어 거대언론을 상대로 한 개인의 피해구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언론피해 구제의 완전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한 사법적 구제의 길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갖는 위력에 비추어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경제성·신속성·실효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로서 언론중재제도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한입법의 원천적 금지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면 그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만들 수 있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한입법의 한정적 허용구조’라는 헌법체계를 갖고 있다(박형상, 2002). 언론중재법도 ‘한정적 허용구조’의 연장선상에서 존재 근거가 이해된다. 하지만 이 법을 비롯해서 언론자유에 관한 제한입법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단서규정의 정신은 언론중재법의 운용과 조정심리과정 등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형법과 민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호소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입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사에게도 법적 불안정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자유로운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법(ADR)의 하나인 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진·유재웅, 2004).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는 사실확인, 현장접근, 취재 대상의 의견이나 입장 확인 등의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정 신청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취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언론의 취재시스템 개선으로 인격권 침해가 예방된다면 언론활동이 촉진되고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는 인격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제도임과 동시에 언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뿐만 아니라 언론활동을 활성화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조정심리제도가 기능하고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운용의 묘’와 ‘조화의 미덕’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논의한 사례들은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에서 조정 심리한 사건들이다. 현재 지역 언론의 위기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을 덧붙여 심리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언론의 경영상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해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이다. 한마디로 거대 중앙지의 지역 침투 등으로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를 중앙지가 지배하고 있다. 광고시장도 마찬가지다. 방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편성, 집행, 장비, 인력 등 모두 중앙방송 중심이다.

오늘날 지역언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언론이 지역사회로부터 기대받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산업적 위기, 정체성 위기, 공동체성 위기 등이 겹쳐 있다. 지역언론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산업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김민남, 2003).

전국토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48%가 살고 있다. 정부중앙부처 100%, 기타공공기관 84%, 총량경제력 53%, 금융거래비중 70%, 조세수입비중 71% 등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심각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공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도 스스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

참고문헌

- 권장원 (2004).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 연고에 의한 사적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164~188.
- 김동규 (2004). 발표저널리즘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93호, 4~17.
- 김동규·김경호 (2005).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33~68.
- 김민남 (1998).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남 (2003).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남 (2004). 지방분권과 지역뉴스가치, 「지역기능 다각화에 따른 전국부 역할 모색」, 이경자 편, 서울: 삼성언론재단.
- 김종서 (1994).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제5집). 서울: 헌법재판소.
- 김창룡 (2001).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 17~28.
- 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367~396
- 박승관·장경섭 (2001).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 35집 2호, 91~114.
- 박형상 (2002). 언론소송에 있어서의 실체적 구제수단. 「언론중재」, 1991년 가을.
- 석희태 (2006). 「언론중재 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양삼승 (2000). '언론피해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언론관련 법

- 률의 쟁점과 개선방안」세미나(2000.11.23~25, 대전).
- 이재열 (1999). 합리적 개인, 비합리적 사회. 「계간 사회비평」, 22, 22~29.
- 이재진·유재웅 (2004). 언론중재제도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 (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67~293.
- 장호순 (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세미나 (2003.8.28~8.30 속초).
- 장호순·오수정 (2001). 한국 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분석. 「보도비평」, 통권7호, 9~62.
- 조항제 (2001). 미디어 권력화의 조건에 대한 이론적 분석. 「언론과 정보」, 제 7호, 165~196.
- Bantz, C. R., McCorkle, S. & Baade, R. C. (1981). The News Factory. G.C.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Vol 2, 336~390.
- Habermas, Jürgen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Neuaufl. Frankfurt/Main: Suhrkamp.
- Hölscher, Lucian (1978). Öffentlichkeit. In: Brunner et al. (Hrs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 4 (pp. 413-467). Stuttgart: Ernst Klett.
- James, C. and Gurevitch, M. (eds.) (1991).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 Edward Arnold.
- Keane, J. The Media and Democracy, 주동환 외 역(1995). 「언론과 민주주의」, 서울 : 나눔.
- Lee, J.(1998). Press freedom,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nd social changes in South Korea: 1981-1996.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 Merten, Klaus (1987). Öffentlichkeit. In: A. Görlitz / R. Prätorius (Hrsg.), Handbuch Politikwissenschaft(pp. 332-337). Reinbeck: Rowohlt.
- Peters, Bernhard (1994). Der Sinn von Öffentlichkeit. In: Friedhelm Neidhardt (Hrsg.), Öffentlichkeit, Öffentliche Meinung, Soziale Bewegungen(pp. 42-76).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Shoemaker P. J., Reese S. D. (1996, Eds).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Longman.
- Tuchman, G. (1973). Making News by Doing Work: Routinizing the Unexpec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pp. 110~131.
- Turow, J. (1992). The Production Process, Media System in Society, Longman.
- Weber, M. (1972). Wirtschaft und Gesellschaft :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Studien-ausgabe, Tuebingen : Mohr.